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5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5. 3(화)	담당부서	무역진흥과, 수출입과
담당과장	이경호 과장(044-203-4030) 이민우 과장(044-203-4040)	담 당 자	송영진 사무관(044-203-4031) 성하진 주무관(044-203-4045)

4만개 수출초보기업에 수출안전망 제공한다!

- 수출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장 -

□ 연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하인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은 **별도의 비용부담과 가입절차 없이** 무역보험을 이용해 **연간 2만불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**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5.3일 **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** 주재로 열린 **'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'**에서 무역보험공사와 무역협회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은 **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**'수출안전망보험'**을 함께 도입키로 하였다.

* 일시/장소 : 5.3일(화) 16:00~17:30,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* 참석 : 산업부, KOTRA, 무역협회, 중진공, 중기중앙회, 산단공, KIAT, 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보건산업진흥원, 콘텐츠진흥원, 플랜트산업협회, 무보, 수은

○ '수출안전망보험'은 수출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**대금미회수 걱정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**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

○ **무역협회를 비롯한 지자체, 중소기업 협단체 등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원으로 수출안전망보험에 가입**함으로써 수출초보기업들은 부담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.

○ 무역보험공사는 '수출안전망보험'의 활성화를 위해 **보험료를 기존 단체보험요율 0.4%보다 더 낮은 0.1%에 제공**하고, **가입과 보상 절차를 완화**하는 한편,

○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**보험료 재원을 추가 확보**함으로써 **지원기업을 4만개까지 확대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아울러, 이날 회의에서 수출지원기관들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, **수출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수출지원사업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**키로 하였다.

○ 우선, 최근 '태양의 후예' 이후 재점화되고 있는 한류 열기를 활용하기 위해 **5월에 중국 선양과 충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'한류상품박람회'**에 KOTRA뿐만 아니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, 보건산업진흥원, 콘텐츠진흥원, 디자인진흥원 등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키로 하는 한편,

○ 내수기업 수출기업화, 해외전시회, 지사화사업, 온라인몰 입점지원 등 **기업 수요가 크고, 단기간 수출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**을 중심으로 **지원규모를 확대**하고, 중소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**이관섭 차관**은 세계경기 부진, 저유가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

○ **"수출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, 각 기관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을 돕는데 힘을 모아 달라"**고 당부하였다.

<첨부> 수출안전망보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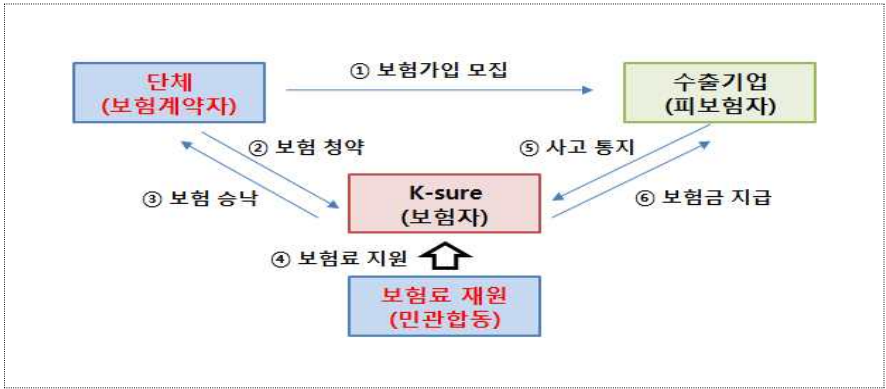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이경호 과장(☎044-203-4030), 송영진 사무관(☎40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첨 부 수출안전망보험 개요

□ **(제도 개요)** 기존 단체보험 제도를 활용, 특정단체가 보험계약자로써 수출초보기업(연간 수출 U$10만 이하의 4.7만개사 및 내수기업)에대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하는 수출안전망 사업 추진

【 수출안전망보험 구조도 】



□ **(주요 내용)** 연간 수출실적 U$10만 이하의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단체보험 대비, 보상한도·보험요율 조정 및 제한사항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 차별화

【 수출안전망보험 차별화 주요 내용 】

구 분	기존 단체보험	수출안전망보험
지원대상	수출 U$30백만 이내 중소·중견기업	수출 U$10만 이내 **중소기업**
보상한도	U$5만 내외 (보상비율 95%)	**U$2만** (보상비율 95%)
보험요율	0.4%	**0.1%**
인수제한국	인수시점 고위험인수제한국가 및 이후 추가지정 국가	**인수시점** 고위험인수제한국가